

2000年度
行政監査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財務局

日 時 2000年6月27日(火) 10時01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10時01分 監査開始)

○委員長 吳弼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재무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 종로구청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先輩 同僚 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위상변화와 의회 기능강화에 합심 노력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들어 지방분권이 급속하게 진전되어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규제가 철폐되고 많은 사무가 민간으로 이양되는 등 자치활동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집행부에서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로구 실정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검토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종로구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감사에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로 재무국의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감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제5항에 의한 선서 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언할 수 있게 하고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董連浩 財務局長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참석하신 委員과 關係公務員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財務局長 董連浩 “宣誓.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財務局

財務局長 董連浩
財務課長 趙秀完
稅務1課長 趙朝翼
稅務2課長 朴升年
地籍課長 徐燦奎

○委員長 吳弼根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董連浩 財務局長으로부터 소속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재무국 소속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財務課 趙秀完課長입니다.

稅務1課 趙朝翼課長입니다.

稅務2課 朴升年課長입니다.

地籍課 徐燦奎課長입니다.

(간부 인사)

○委員長 吳弼根 이어서 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財務局長 董連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吳弼根 委員長님과 崔康洵 幹事님! 그리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제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저희 재무국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현황, 당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財務局 業務報告

(財務局)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吳弼根 董連浩 財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종료구

의회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5급이상 과장급 공무원만 답변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담당주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료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金福同委員長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연일 감사에 대비하시느라 董連浩 局長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에 우리 종료구청의 재무국장이 소관되는 세액이나 모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다를 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예요?

○財務局長 董連浩 재무국소관만 말입니까?

○金福同委員 예.

○財務局長 董連浩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곧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그 정도는 재무국장님이 다 준비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죄송합니다.

○金福同委員 내용을 보면 1년에 종료구청 살림살이를 다 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쓰고 어디에 예산을 집행하고 종목만 나와있지 그래도 약 1,500억을 다루는 재무국에서 은행에 예치했다가 이윤이 얼마 나왔다, 이자가 얼마 나왔다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예치된 자금의 예금현황은 별도로 유인물에 게재를 안했습니다마는

○金福同委員 구두로라도 발표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현재 지금 예치되어 있는 자금은 130구좌에 395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개월짜리 정기예금에

33계좌 66억, 또 3개월짜리 정기예금에 30계좌에 60억, 6개월짜리 정기예금 6계좌에 6억, 1년짜리는 2계좌에 20억을 지금 예치를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금의 소요를 예측을 해서 기간별로 예상을 해서 예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金福同委員** 예치만 되어 있지 단 개인이 은행에 천만원을 맡겼을 때 예를 들어서 천만원 맡겨서 한달에 이윤이 얼마 붙는다. 이자가 얼마 남는다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보고할 때 보면 이자가 예를 들어서 1,500억을 1년에 거래를 했는데 거기에 몇월 몇월 적립을 해서 총 이윤이 얼마 남았다 이자를 어느 곳에 썼다 이러한 것이 명백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없죠?

○**財務局長 董連浩** 그것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총 예치를 함으로 해서 발생한 이자가 얼마인가가 별도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통해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1월에 2억 4,300만원, 또 2월에 3억 1,700만원 등 매월 집계하면 연간 발생한 이자는 37억 9,700만원 정도가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金福同委員** 그렇다면 각 토지, 건물에 대한 과세 중에서 37억이란 이윤을 우리 구 재정에 보태서 살림을 하고 계시죠? 이런 정도는 항상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종로구 살림을 우리 財務局長님이 쥐고 살림을 하고 계시는데 최대한 위원이 질문을 하면 즉각즉각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金福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李炯述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징수교부금이 수입 부분의 징수율이 11.4%인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稅務2課長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러세요.

○**稅務2課長 朴升年**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시세를 받았을 때, 또 세외수입 중에서도 각종 수수료, 국가에 귀속되는 수수료를 받았을 때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 시세교부금이 3%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이제 1기분 나갔습니다. 주민세도 지금 한창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12.4%인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연말이 되면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李炯述委員** 재산세 임대수입 부분이 현재 23%죠? 이게 4월 30일 현재 기준이요? 이 재료에 있는 거. 재산세 임대수입이 23%밖에 되지 않는,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됩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지금 현재 재산세 임대수입에 관한 부과가 6월 말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까지 징수가 되면 실적이 고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李炯述委員** 지금 6월 하순이 닥쳐오는데 기이 재료를 해주려면 5월 말 정도로 해가지고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지 이 재료를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한테 큰 참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도 죽 보니까 굉장히 부진해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느 부분을 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그러니까?

○**稅務2課長 朴升年** 우리가 세외수입에는 정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정상적 세외수입은 어떤 재산의 임대라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정상적 세외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의 매각이라든지 불하 이런 경우에 들어오는 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李炯述委員** 그런데 어떻게 4월 30일 현재로 135%나 됩니까? 기준치를 어떻게 잡은 겁니까?

○**稅務1課長 趙朝翼** 이 목표액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년에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액을 이렇게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와 가지고 동기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 예년에 비해 가지고 목표액을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각 주관 과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세무1과에서 48개 세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잡아놓은 건데 이진 목표액을 저희들이 집계해놓은 거구요 각 세목별로 각 주관 과에서 48개

○李炯述委員 됐습니다. 됐구요 다음연도 목표를 잡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할 일이지 이거 1년 중 4개월 분의 진행과정이 135%란 숫자가 나오면 이 목표라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측도 않고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가 더 됩니까?

○稅務1課長 趙朝翼 임시적 세외수입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생기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특별히 남은 기간 4월 말까지 했습니다만 8개월 동안에 전혀 안 생길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서는 주관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李炯述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財務局長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주먹구구식의 예측불허. 그거는 얘기가 안됩니다. 어느 정도 1년치에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35% 초과 달성한다는 얘기는 연말에 가면 이게 한 400%, 500% 될 수 있다 하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은 잘 챙겨서 우리 위원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자료에 이런 부진한 게 안 나타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인데 종로구 관내를 측량하는 거는 지적공사지요?

○地籍課長 徐燦奎 네.

○李炯述委員 다른 데는 없지요?

○地籍課長 徐燦奎 네.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하고 난 뒤에 사후감독을 합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분할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측량 검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종로관내의 가회동~감사원 가는 도로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205m 동쪽 편에 도로 개설하는 측량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그 사항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李炯述委員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도로를 감사원 올라가는 도로측량 도시계획 도면을 보면 직선으로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이 바르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잘려나가는 도시계획 도면에 잘려나간 도로를 잘라내고 난 뒤에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은 경남빌라에서 감사원 올라가는 북쪽입니다. 한옥 한 채가 남쪽에서 보면 한 5m가 돌출되어 있고 북쪽에서 보면 한 3m가 도로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 그 어있는 거는 일직선으로 그어 있는데 그게 왜 그 어있는지 답을 좀 주시죠.

○地籍課長 徐燦奎 저희 과 소관사항은 아닌데

○李炯述委員 아니 측량하는 부분 아닙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아닙니다.

○李炯述委員 측량은 어디서 했습니까? 서울에서 했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공사 부서에서 측량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아니 도로측량 부분은 지적과에서 감시,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아닙니다.

○李炯述委員 그럼 어디서 합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발주 되면 공사 부서에서 지적공사에 직접 발주를 해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러면 종로구청 지적과는 어떤 부분, 측량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地籍課長 徐燦奎 저희들이 측량검사를 하는 것은 토지대장 정리를 하는 분할측량이라든지 신규 등록 측량이라든지

○李炯述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적공사 감시, 감독하는 부서는 종로구청에서 어느 과입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종로구청에서 누가 감독을 하고 누가 지적공사를 다루는지 그 부서를 알려주세요.

○地籍課長 徐燦奎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하고 있으면

○地籍課長 徐燦奎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아마 본회의장에서도 질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선 때문에, 측량이나 그런 사항 때문이 아니고 방향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을 제대로 확보가 됐는데 모양이

○李炯述委員 본 위원이 묻고싶은 점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했을 때 그걸 다루는 부서가 어느 과냐 이겁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인척할 길이 없잖아요? 지적공사에서 잘못했으면 그걸 감시, 감독하는 부서가 불러다가 잘못된 내역을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현장을 조금 전 우리 지적과장도 말씀드렸지만 본회의 구정질문시에도 李炯述委員님께서 언급하신 것과 관련된 것 같은데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그동안 측량이 제대로 잘못된 결과에 따라서 돌출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 사유를 규명해서 만일에 지적측량 잘못으로 인해서 한옥이 3~5m 돌출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내가 이 자리에서 지적과장한테 다시 반문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도로의 선이 육안으로 봐도 일부분이 튀어나왔어요. 다시 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집은 이미 2~3개월 전에 15m²라는 땅이 잘려나가 가지고 보상을 끝내고 집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하지 않은 집 같으면 모르는데 일단 잘려나간 도로는 잘려나갔다 그래서 15m² 보상을 받고 수리가 다 끝난 상태거든.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측량 부분은 지적과다. 측량 부분이 잘못됐으면

지적과에서 당연히 챙겨야 될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李炯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金福同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우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추진 해서 보면 부동산에 관련한 홍보물 배포 뭐 이런 게 있는데 홍보만 하고 배포 분량을 7,200매를 신고, 6,000매를 홍보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동산 업무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회비 이런 것이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게 전혀 없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있으면 나열을 해주셔야 되는데 부동산중개업 허가신청 현황 해서 찾아보니까 전혀 없네요? 여기 보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부동산업자에게 홍보나 이런 거 다 해줘도 전혀 들어오는 수입이 없이 우리 혈세를 받아 가지고 홍보만 해주고 그러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이거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해서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金福同委員 그렇다면 課長님! 명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보면 우리가 그냥 중개업소 홍보만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아닙니다. 28쪽 뒷쪽에 보면 업무정지 1건하고 과태료 부과는 4건 했습니다. 실시해서 그 금액만 적지를 앓았습니다.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金福同委員 다음은 우리 지적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 7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측량한 게

12평이라고 해서 엄청난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내지를 못했는데 재산압류를 하고 심지어 차에다 압류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평수를 정확하게 해서 서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課長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局長이 답변드리겠는데요 그 지번을 말씀해주시면 현장을 확인해서 지적 측량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임대료 부과가 잘못했다면 별도로 조치를 해서

○**金福同委員** 연도별로 보면 이 집에서 어린애를 낳아서 그 어린애가 30세가 넘었습니다. 30년 이상을 사용하고 살았는데 30년 전에는 없다가 10년 전으로 해서 세금고지를 한 걸 보면 약 20만원, 10만원 내던 것을 요즘에 와서는 천 몇 백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근근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동차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항의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가져오지 않아서

○**財務局長 董連浩** 자료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지적과 가보니까 상당히 무서운 곳이라구. 없는 사람 예를 들어 7평 쓰는 사람 12평이라고 해서 부과를 시켜 가지고 서민들 올리고.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地籍課長 徐燦奎**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金福同委員님께서 효제동 175-1번지 도로점용료 때문에 말씀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저희 지적 측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나 이런 데서 점용료 부과를 할 때 민원인들이 제출한, 또는 옛날부터 부과했던 목측이나 개략적인 면적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용료가 '97년부터 체납이 됐는데

○**金福同委員** 얼마 나왔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총 3,800만원 정도 체납이 됐습니다.

○**金福同委員** 원칙은 7평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건 얼마나 됩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그것은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이게 영업용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단가가 높아서

○**金福同委員** 그럼 地籍課長님이 다시 측량하셔 가지고 깎아줄 용의는 없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아닙니다.

○**金福同委員** 아니 이거 사용을 7평밖에 하지 않았는데 13~14평 쓰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부과가 됐을 거 아닙니까? 지적과에서 원칙적으로 고쳐서 올려줘야지요?

○**地籍課長 徐燦奎** 지적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국공유지 점용료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점용상태를 조사하고 면적 측량을 해가지고 점용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지적과 하고는 무관한 사항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여기는 하천부지입니다. 도로점용료가 아니고 원래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복개공사를 하기 전에는 하천이었습니다. 하천이 있을 때부터 천막을 치고 살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점용료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잘못된 것입니다. 課長님께서 확인하신 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金福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丁炳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財務局長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 16쪽을 보시면 2000년 자치구세 세입증대 세입목표액 해서 2000년도 목표액에는 1,487억 1,100만원이고 '99년도 과년도는 1,494억 9,900만원인데 7억 8,800만원이 목표액보다 덜 설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일반회계에 대체적인 목표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약 10억 정도가 감소돼 가지고 그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목표가 줄어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丁炳煥委員** 일반회계에서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특별회계에서 줄어들었다? 특별회계가 줄어든 이유는 뭐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주차장특별회계 그것이 특별회계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건 주로 주차단속이라든지 주차장 운영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확보되는 세입입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세입 감소로 인해서 목표량이 줄어든 것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19쪽 지방세 세무상담실 설치운영추진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방세나 각종 세금이 체납된 데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재산세,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財務局長 董連浩** 그걸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체납은 우선은 독촉장을 주기적으로 발송해서 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또 그게 고질적으로 안내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재산에 의한 압류도 하고 또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제한을 의뢰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체납정리를 하는 한편 그도 저도 꼭 안 내는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된 재산을 공매처분해 가지고 체납을 받는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 고지서 독촉장만 수십 번 보내고 아무 효과도 없는데 혹시 그 현장 실사 한번 한적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일률적으로 현장을 다 실사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고액이고 그런 체납자에게는 현장 실사도 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네. 좋습니다. 과세를 했는데 앉아서 세수만 하고 연체된 거는 독촉장만 보내고 있는데 실제 현지답사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보면 '90년도에 부과된 세금이 이제 독촉장을 보냈는데 10년 지나서 이제 보내 가지고 과연 이것이 회수되리라고 보십니까? '90년도에 종합소득세라고 부과시켜서 금년 6월 14일에 납부하라고 독촉장을 보냈는데 이 통지서가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보내셨습니까? 제가 여기

증빙자료를 가져왔습니다.

○**稅務2課長 朴升年** 지금 그 고지서를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맙습니다. 이 분 것은 '90년도 소득분을 '96년도에 부과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시차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일단 종합소득을 종로세무서라든지 아니면 세무서에 국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납부자료를 저희들한테 세무서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96년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준 겁니다. 세무서에서. 그래서 '96년도에 부과를 해가지고 고지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독촉고지서를 보낸 겁니다.

○**丁炳煥委員** 좋습니다. 독촉고지서 보낸 건 좋은데 사실확인을 해봤습니까? 그 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종로관할에 거주하고 있는가 아닌가 확인하고 보내셨습니까?

○**稅務2課長 朴升年** 지금 현재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보낼 때는 행정자치부 전산망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가지고 그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확실한 것만 보내는데 이게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됐든지 오류가 됐든지 하면 전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작업을 하고 또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사를 간 사람한테도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바로바로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걸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체납만 되었다고 하지 마시고 앉아서 독촉장만 100번 보내면 뭐 합니까? 한번이라도 관할 동사무소 담당 동직원이라도 실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 주민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지 실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유인물 21쪽을 봐주십시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거는 한시법이 되겠죠?

○**財務局長 董連浩** 네.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공유지분할은 특례법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분할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7건인데 92건만 처리하고 75건은 처리를 안 했는데 이분들이 167건 전부다

분할을 원하고 있을 텐데 이거는 우리가 즉 말하자면 그 분을 위해서 통보를 해줘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저희가 조사를 해서 총 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7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각 호별방문도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직접 수차례 방문도 했습니다만 공유토지주 간에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신청이 안 되거나 또는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가 97건으로 불가피하게 분할할 수 없었던 게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신청종용을 받아서 분할한 92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해에도 봄부터 일찍 호별 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간에 면적이 차이나고 경계설정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합의가 안된 7건만 남아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공유지 분할은 공유자에 대한 전원 합의가 있어야만 분할이 가능합니까? 특례법에

○**地籍課長 徐燦奎** 예, 그렇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계속 이것이 판결받는 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특례법에 판결받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어느 일방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당사자의 문젭니다. 이것은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그래서 75건은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유인물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맨하단에 보면 단속 결과 5건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건인데 업무정지는 어떠한 경우에 업무정지를 내리고 있습니까? 과태료부과 유형별로 세분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

에서 중개수수료를 규정된 것보다 많이 받는다는 업무처리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 처해지는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마는 여기서 업무정지를 받은 업소는 수수료를 규정된 금액보다 많이 받아서 가해진 행정처분입니다.

○**丁炳煥委員** 업무정지 기간은 얼마쯤 정지를 하십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그게 사안별로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법 위반사항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이것은 1개월입니다.

○**丁炳煥委員** 경미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저희 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및 그 하위법인 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몇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3쪽을 봐주시시오. 체납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현년도, 전년도 체납건수가 166,451건인데 이것은 아까도 반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166,400건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166,000건을 현장을 다 답사를 하지는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기적으로 납부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조금 고액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전화번호 같은 것을 확인해서 전화로 독촉전화도 해서 납부를 독려를 하고 필요시는 재산을 압류를 해서 재산을 사용하는데 좀 나름대로 제한을 가하는 한편 신용정보를 은행에 의뢰를 해서 제한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압류된 재산을 공매처분해서 체납된 세금을 건어들이는 그런 체납활동을 지금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아무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59쪽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일반회계 정기에 금 예치내역인데요 만기가 도래한 것은 어떻게 처

리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만기가 도래한 것은 남아있는 자금현황을 분석을 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채 예치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일정한 기간을요? 그리고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월별 이자수입 현황인데 매월 정기예탁 했을 때는 매월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잡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기예탁의 경우는 매월 수령하지 않고 복리로 그 기간에 만기에 수령하면 이자가 더 높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런 수익이 최고로 많을 것을 예상을 해서 그리고 자금의 소요를 그리고 어느 시기에 돈이 얼마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기간을 정해서 최고로 많은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높은 이자를 예치하리라고 믿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매월 예치한 이자를 매월 즉 말하자면 수령하지 마시고 만기에 1년 예약을 하든지 6개월 예약하든지 예탁기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수령할 때는 금리가 다소 높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를 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라는 발생한 이자는 당연히 재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아니, 재적립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가령 1억을 예치를 했다 1억원의 이자를 한 달 그때 그때 찾지 않고 원금과 똑같이 찾을 경우에는 복리계산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財務課長 趙秀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 가지고 있고 정기예치금 우리가 활용 예측을 해가지고 단기로 1개월에서 3개월 많으면 1년까지 예치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서 이자에 대한 복리 이것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아니면 전체 금고가 특별한 상품, 자기네들이 발행한 특별한 상품 이외에는

복리계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 가지고 다시 예치를 해가지고 금리를 받고 있죠.

○丁炳煥委員 그런데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금융기관에 좀 가셔서 상담을 해서 앞으로는 정기예탁을 하실 경우에는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복리로 만기에 찾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財務課長 趙秀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吳弼根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宣相善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董連浩 財務局長님! 재무국 소관 관계공무원들께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7쪽을 보면 국·공유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시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은 2,331건에 면적이 325,864㎡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유재산 건수와 면적이 확실한 겁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건수와 면적은 일부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재측량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현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 국유지, 시유지 똑같죠?

○財務局長 董連浩 예.

○宣相善委員 시유지에서 구유재산으로 바뀌어진 게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財務局長 董連浩 시유지에서 구유지로요?

○宣相善委員 그동안에 시유지에서 구유지로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시유지는 시유지고 구유지는 구유지고

○宣相善委員 면적에 따라서 구유지로 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시유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구유지로 바뀌어져야 할 땅들이 있습니

다. 면적이

○財務局長 董連浩 '88년도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시기에 맞춰서 구유지는 구유지대로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분리를 했었습니다. 일제히 해서 물론 분리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일정 규모 미만은 구유지, 일정 규모 이상은 시유지 그런 분류기준을 적용해서 구유지와 시유지를 분리를 한 이후에는 시유지를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사거나 무상으로 받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시유지가 구유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宣相善委員 당초 '88년도에 시유지와 구유지를 분할하면서 동안에 우리 시유지를 구유지로 해야 할 것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있다고 봅니다.

○宣相善委員 국장님은 종로구 재산담당관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맞습니다.

○宣相善委員 우리가 땅을 찾을 것은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지금 시유지로 되는 땅도 당연히 구유지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유지나 국유지로 있는 땅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宣相善委員 그동안에 얼마나 찾았느냐 이겁니다.

○財務課長 趙秀完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재산을 시유지는 시에서 관할을 하고 구유지는 구에서 관할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재산이라도 넘길 적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구유지 전체, 시유지 측량작업을 금년까지 종결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발주가 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몇년도라고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유지 찾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찾고자 했는지 그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거를 해주시고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의 대지사용료나 도로점용료 부과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

까? 잘 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것은 파악된 범위 내에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 사용하는데 지금 체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감사자료로 제출한 유인물 171쪽에 관련 되는 자료가 나와있기에 그것을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수입 조정수납현황이 되겠는데요. '99년도에 대부료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합해서 1억 4,370만원이 대부료로 변상금이 4억 6,000 그리고 매각대금은 8억 1,9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9년도 실적이고 2000년도에는 바로 밑에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료가 845만원, 변상금은 1,660만원, 매각은 2억 6,5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매우 저조하네요. 예를 들자면 국유지 사용하는데 옛날에 5년치를 소급해서

○財務局長 董連浩 변상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너무 저조하네요?

○財務局長 董連浩 저조하다는 말은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에 미달되었을 때 저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 변상금 또 필요시 매각할 경우는 매각대금 이것도 파악된 범위 내에서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저조한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宣相善委員 그동안에 몇십년씩 사용하고 있다가 그것을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5년치 소급을 해가지고 부과를 시켰는데 그 돈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당연한 말씀이죠. 징수를 해야죠.

○宣相善委員 그림에도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財務局長 董連浩 자료에 보시면 '99년도에 변상금같은 경우에는 4억 6,000을 조정해 가지고 3억 1,300만원을 받은 그런 실적이 나옵니다. 이것이 한 70%가 채 안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세목 징수하는 것에 비해서는 징수율은 좀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지금 지역에 가다 보면 휴즈나 이런 거 사용하면서 전혀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원발굴을 했느냐 말입니다. 세원발굴 했느냐 그겁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宣相善委員 지속적으로 누가 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우리 재무과의 재산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이긴 합니다마는 하기도 하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관리가 되지 않은 국·공유지가 있을 때는 보고토록

○宣相善委員 지금 지역에 가보면 곳곳에 그냥 소위 사용하는 사람이 시유지나 구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정말로 지적도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리고 지적과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종로에 불보합지역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불보합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언제부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실제 불보합지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宣相善委員 등록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승인2동 181-95 그 부근을 아십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그것은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건축과에 왔는지 지적과의 지적사항 아십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아니고요. 그게 내용이 앞에

○宣相善委員 아니, 지적과는 그런 불보합지역이 있으면 지적과에서

○地籍課長 徐燦奎 그것은 불보합지역이 아니고 그 옆집에서 자기가 점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민원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아니, 제가 질문 내용 중에서 불보합지역이라서 공사가 늦어졌다고 분명히 답변을 들었는데 불보합지역이 없었던 말이에요?

○地籍課長 徐燦奎 없습니다.

○宣相善委員 없다면 지적과에서는 정리를 언제 했어요? 지적과에서 정리를 합니까? 다른 데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하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地籍課長 徐燦奎 불보합지역이 있으면 불보합지역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불보합지역은 없었습니다.

○宣相善委員 없어요? 그러면 있었으면 어떻게 할 거요? 과장님이 저기 할 거요?

○地籍課長 徐燦奎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宣相善委員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지연되는 이유가 불보합지역이라서 늦어집니다라고 답변을 했던 말입니다. 鄭興鎭 區廳長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地籍課長 徐燦奎 그 부분이요? 불보합지역이 아니고 지적 용어에서 불보합지역이라 함은 지적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조사해보니까 불보합지역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이 도면이 600지역하고 1,200지역이 있는데 두 도시계획선이 오다 보니까 거꾸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宣相善委員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가 1,200분의 1, 600분의 1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불보합지역이라는 것은 처음 나는 답변을 들어서 알았어요.

○地籍課長 徐燦奎 도시계획선이 불보합이 된 거 지 지적이 불보합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서 담당이 하는 말은 자기 땅 위에 건물이 안 들어서 있고 옆집 땅하고 같이 물려있는 게 그게 불보합지역 아니겠습니까? 밀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대지 위에 내 건물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을 그래서 이번에 불보합지역을 정리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적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현황이 일부 안맞는 게 있었지 지적이 불보합은 아니고 도시계획선이 불보합됐었습니다.

○宣相善委員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그 부분은 지적불보합이라고 하면 경계선이 험클어져 가지고 전부다 지적을 정리해서 면적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아니면 경계조정을 해야 하는 지역을 지적불보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적도 축적이 공교롭게도 1,200하고 600이 만나는 부분으로 도시계획선이 당초 고시날 때에 어긋나게 고시 나서 도시계획선이 불보합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지적불보합으로 말씀드린

○宣相善委員 답변을 지금 주택과나 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표현을 잘못했다는

○地籍課長 徐燦奎 알기 쉽게 표현하느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알기 쉽게라고 하면 안되죠.

○地籍課長 徐燦奎 아래 지역의 도시계획선 지적하고 1,200 지역 도시계획선 지적하고 안맞으니깐 그것을 쉽게 말씀하시느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으니깐 다음에 거기에 대해 답변하신 분들이 누가 잘못했는지 확실히 과장님 책임을 지세요?

○地籍課長 徐燦奎 예, 알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宣相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崔康洵 幹事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康洵委員 결산검사 8쪽을 좀 봐주세요. 과년도 지방세수입 미납액 비율을 보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결산검사 의견서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년도 체납액이 해마다 저조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여 왔으나 그때마다 질의와 답변을 되풀이만 하고 있는 것 같고 감사가 끝나면 그대로 덮어두는 것 같은데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체납에 지금 어떠한 특단의 조치로 일소할 수 있는지 현실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체납실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丁炳煥委員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체납을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받고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압류된 재산을 공매까지 하면서라도 체납된 체납세 지방세 징수에 노력을 다 기울일 아주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있음을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崔康洵委員 본 위원이 말이죠, 한 번 겪은 일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재산에 다 가압류를 시켜버리더라구. 그러니까 돈을 들고 가서 내게 돼요. 이런 것도 %를 보면 '97년도에 14.4%, 면허세 총계를 보면 '97년도에 22.6% 또 '98년도에 15%, '99년도에 17.6% 이렇게 자꾸 저조한데 이것은 혹시 세무과직원들이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아무튼 자료에 그리 나와서 결과적으로 징수활동이 부진했다는 말씀으로 자료가 됩니다.

○崔康洵委員 조금 강하게 우리 국민들은 말을 아주 잘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崔康洵委員 그리고 행정사무자료를 보면 67, 68, 69 여기 좀 봐주세요. 플래카드나 우리 국장님께 구정업무 홍보를 위한 광고물 계약현황을 보면 몇 개 업체만 특정업체만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플래카드를 3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3개 금액이 얼마가 하면 5만원이에요. m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해 못할 것이 많아 있는데 수량은 안 나와 있어도 금액이 엄청나게, 67만 2,000원, 46만 4,000원 금액이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수량이 몇 개인지는 모르고 또 특정업체만 나와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모든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겠지만 이 데이터를 볼 때 종로구에서 몇개의 업체를 진정으로 다른 업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많은 업체들이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하는 건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종로구에 광고물제작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갖다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 입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우리 종로구 수입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98년부터 2000년 5월 말까지 제작된 플래카드는 333개입니다. 자료에 구매 부서를 보시면 상황을 알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관내 여러 개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발주를 하는 관계로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주는 안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발주를 해서 플래카드를 제작을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몇 개 업체가 독점을 하는 그런 모양이 됐지 의도적으로 이게 어느 특정업체를 발주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된 사항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플래카드란 게 속성상 상당히 시위성을 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플래카드는 어느 특정시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된 게 대부분인데 그런 시위성 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하나는 이 플래카드 만드는 게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고

아까 崔康洵委員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불가피하게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崔康洵委員 그리고 67~75까지 전부 플래카드 이런 건데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엄청나게 많은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다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사무용품구입비가 통계표를 보면 '99~2000년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을 1회용이란 인식이 있다면 예산을 절감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왜냐 하면 개개인의 물품구입비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체의 이런 값이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감사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금액은 대단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사무용품을 절약하는 지혜를 쌓기 위하여 이런 물품구매 단계부터 낭비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77쪽에 보면 각 부서별로 구입한 사무용품의 세부내역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무용품은 조달청 구입을 통해서 일반 시중의 단가보다도 20~30% 정도의 반 가격에 구입을 하고 있고 또 싸게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건을 아껴 쓰고 또 그걸 오랫동안 쓰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사무용품을 절약하고 아껴 쓰는 그런 것도 우리 직원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崔康洵委員 물론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지만 또 우리 구수입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종로구에 좋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이 쓰는 여러 가지 물품도 좋은 거 갖다놓고 쓰면 좋겠지만 우리局長님의 많은 절약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弼根 崔康洵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丁炳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감사자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상단 국공유재산 수입조정수납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료변상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에서 합계액이 1억 4,666만 8,000원이 미수납됐는데 이것은 일반 다른 세금과 달리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왜 수납을 이렇게 못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조정된 대로 수납이 다 됩니다. 그리고 매각대금도 조정된 대로 수납이 다 되게 되어 있는데 변상금의 경우는 과거 5년간을 소급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체납이 되는 경우는 다른 일반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서 못낸 것처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체납액으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이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어떤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우선은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필요하면 이 재산에다 압류를 시켜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한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재산 매각을 한다든지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단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丁炳煥委員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거를 회수하는 길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 토목과 소관입니다만 우리 局長님을 당초에 예정가격을 정하고 낙찰가격을 정했는데 여기 연번 33을 보니까 약 1억 7,700만원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추가됐는데 이런 거는 토목과에서 청구서가 들어오면 점검을 하지 않고 돈을 그냥 마구 내줍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사유와 그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 자금을 지출하는 부서인 우리 재무국에서는 별도로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丁炳煥委員 각과에서 철저한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 재무과에다 자금 요청을 하면 이것은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지출해주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검토를 안 한다는 거는 서류 검토로 일관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왜 됐느냐? 또 설계변경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의 어떤 기술적인 검토까지는 저희 재무국에서는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丁炳煥委員 이 문제는 토목과에다 질의를 하겠습니까만 우리 財務局長님께 묻고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丁炳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대지가 메말라서 온 국민이 기다리던 비가 어제 축축히 내려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행복스러운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해주신 局長님과 課長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선배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거 보고 답변이 영 소홀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감사준비를 하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하신 거와 중복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구기동 139번지 외국인 공판단지는 여러 차례 입에 오르내렸던 자리입니다.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거기를 여러 가지 활용가치로 쓰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여기 자료와 같이 별개의 대사관부지 매각 진행 중이라든지 이라크 대사관부지 매각, 러시아 대사관부지 매각 진행 중이라든지 이렇게 매각을 하고 나면 과연 우리 종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시설물이나 자재품들은 다 어디로 할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局長님께서 우리 종로구의 총 재산을 관할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셨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구기동 139번지 일대에 조성된 외교 공관단지는 지금 副議長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양여를 받든지 필요하면 저희 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청과 협의를 했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 區廳長님께서 市長님하고 별도로 면담을 해서 이 문제를 협의를 해왔었습니다만 외교공관단지로서 지정이 된 목적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음에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吳錦南委員 사실 구기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종로구에 시소유가 요소소소에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도 물론 수고를 많이 하셨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 구로 이관되거나 우리 구로 재산권이 이전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민선이 돼서 5년 동안 과연 우리 종로구로 서울시나 구유지로 편입된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러니까 시유지나 국유지 중에서 우리 종로구로 무상 양여가 된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吳錦南委員 네.

○財務局長 董連浩 그동안 파출소로 쓰던 장소가 파출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걸 저희가 양여를 받아서 복지시설로 쓴다든지 저희 구에 무슨 행정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그런 부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 이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 종로구가 시와의 로비관계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너무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런데 시유지를 무상 양여함에 있어서

○吳錦南委員 아니 또 우리 구에서 할부로, 연부로 산다든지 그러한 장소가 얼마든지 있어서 의원님들이 질의도 했고 또 감사 때도 많이 얘기를 했

었습니다만 한 건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뭐 기상대라든지 종로2가 새마을본부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 여러 군데를 지적해서 얘기를 했지만 연부로 사든지 아니면 종로구의 예산을 들여서 사겠다 해도 이뤄진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대단위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사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우리 재정 형편상 또 땅을 가지고 있는 주체의 매각이 대단위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의 땅을 저희가 매입한 경우는 더러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 제가 보고를 드리자면 시유지나 국유지를 자치단체의 장이 무슨 로비를 한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무상 양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吳錦南委員 로비를 한다는 것을 제가 하나의 예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구의 예산으로써 우리 구청장께서 시장님하고. 면담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연부라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가 자주 없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그동안의 예를 들어서 보고드리면 지금 기상청부지로 활용됐었던 교남동의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무슨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매입하거나 아니면 무상 양여를 받거나 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걸 우리 구에다 관리를 위임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그 관리를 위임받아 가지고 필요하면 거기를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방법요원 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 구에서 배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명분을 축적해서 어느 시점에 그걸 무상 양여를 받든지 필요하면 우리가 그걸 연부로 사든지 하기 위해서 명분 축적을 해나가려고 했었습니다만 또 얼마 전에는 그게 시에서 또 다른 용도가 생겼다고 그래서 다시 회수해가는 그런 일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여러 부지 이를테면 기상청부지, 공관단지부지 또 효자동

의 옛날 보험감독원 자리 거기도 재무부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여건 때문에 구입을 못 했거나 양여를 받지 못했음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안된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혜화동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우리 예산으로 사지 않고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우리가 양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네.

○吳錦南委員 이런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우리 구민을 위해서

○財務局長 董連浩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吳錦南委員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18페이지 2000년도 일반경쟁입찰 및 낙찰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죽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짧은 기간에 4~8월까지 준공기간이 되어 있고 또 1번에 보면 공원녹지과 소나무가로수 식재공사 해서 설계변경 후 공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할 때는 재무국에서 하지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럼 설계변경해서 다시 추가공사를 하면 그건 어디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돈은 재무국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일을 하는데 설계변경해서 나가는 것을 재무국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財務局長 董連浩 모르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 행위 그 자체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행위를 하고 행위를 한 그 결과를 재무과에다 통보를 해주면 그 서류를 검토해서 공사대금을 지출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뒷면에 보면 22쪽 근거법령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

항5호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財務局長 董連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5호에 1억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3,000만원 이하인 물품제조 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공사 수주 건수 및 시공회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계약일자가 3월이고 준공일자 12월, 6월, 5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공사건수는 거의가 다 우수기 때 가장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공사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기타 굴착이라든지 이런 공사들인데 과연 우수기에 이런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이 계약 날짜에 끝날 수가 있는가? 만약 굴착을 했을 경우에 그 중간에 우수기에는 어떻게 주민들의 불편이 있겠는가 하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공사입찰을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현실적으로 입찰하고 계약에 관련된 업무를 우리 재무국에서 추진하면서 그런 공사기간을 어느 시점에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관 부서에서 우기에 또 아니면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고려해 가지고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吳錦南委員 先輩委員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반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9, 60, 61, 62쪽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정기에금 예치내역을 보면 6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년짜리도 있고. 그 이자율을 보면 6개월짜리가 7.4%, 12개월짜리가 8.9%, 1개월짜리는 5.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이걸 환산해보니까 한 40억 이상이 1개월짜리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40억이란 것이 1~2개월 내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것을 3개월짜리도 할 수 있고 2개월짜리도 할 수 있는 예치가 가능한데 거의 1개월짜리 상당히 많습니다. 뒷면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의

재정을 담당하는 총책임자로서 과연 이렇게 예치를 해서 손실을 많이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의문스럽고 丁炳煥委員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 하셨습니다만 복리계산을 해도, 이자를 매월 찾지 않고 복리를 해도 될 수 있는 특별회계 200억 이상 되는 그런 돈도 매월 찾았다고 하면 局長님 말씀대로 1년에 39억의 이자를 얻었다 할 경우 30억에 대한 복리는 손해를 봤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월 이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 39억을 매월 이자를 찾지 않고 복리로 놔 뒀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더 많이 붙었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치 관계가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얼른 보더라도 1개월짜리가 5.6이고 3개월짜리가 8.9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2.3%란 이율이 벌써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局長님으로서 우리 재정을 맡은 종로구 전체의 예산을 맡고 있는 局長님이 예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財務局長 董連浩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국 입장에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율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관리는 너무도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 평균 지출이 되는 자금 규모가 한 65~70억 정도의 자금이 지출됩니다. 월평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들어오게 될 자금과 월 지출이 될 자금을 예상해 가지고 가능한한 많은 기간 동안에 은행에 예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입니다만 이것을 무조건 이율이 높다고 그래 가지고 장기간 예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예를 들면 주차장특별회계가 한 270억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회계에서 한 70~80억을 주차장 부지를 사려고 현재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200억이란 것은 2년도 좋고 3년도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돈을 12개월로 묶어둔다든지 1년 반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局長님 생각에 우리 종로구 예산에 많은 손실을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매달 60억이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1개월짜리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오랫동안 그렇게 뒀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연수를 맞춰서 해야되지 않나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吳錦南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종로구의 예산 관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다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종로구의 총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방세, 시세, 국세 할 것 없어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현재 작년 '99년도말로 지방세가 구세예요. 구세가 얼마 정도 미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세, 시세, 특별회계 또 교통지도과, 행정과 합쳐서 구세, 시세 총 망라해서 얼마가 지금 현재 미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세의 경우는 현재 체납액이 53억 3,600만원

○吳錦南委員 총계가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리고 시세가 375억 4,000 그래서 도합 428억 7,700만원 정도의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시세와 구세가 체납된 금액이고 또 특별회계는 약 190억 정도 체납되어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세외수입이 21억 4,000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테니까 계산 좀 해보세요. 지방세 구세가 162,000건에 176억 6,000만원이 지금 현재 미수납이 되어 있고 시세가 131,000건에 408억 1,4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고 특별회계에서 교통

행정과에서 3억 3,457만 8,000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 교통지도과에서 182억 6,574만 6,000원이 지금 현재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가 지금 얼마인가 말씀해 보세요.

○**財務局長 董連浩** 약 769억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吳錦南委員** 국장님이 우리 구에서 받아들여야 될 세가 769억 정도를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연 이것을 50%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얼마만한 이자가 또 나오겠습니까? 우리 종로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국장님께서 이러한 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하고 체납은 말입니다. 과세정의 차원에서 납부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서는 철저히 이 768억이 되는 체납을 빨리 %를 좀 낮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계실 테니까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질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기간이 충분했는데도 吳錦南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후 답변에는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7分 會議中止)

(13時31分 繼續開議)

○**委員長 吳弼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董連浩局長님! 외 課長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마는 몇가지를 안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묻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이신 우리 崔康洵委員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는 묻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67페이지를 보게 되면 67페이지에서 무려 73~75페이지까지 무려 현수막, 홍보를 위한 광고물 현황 해서 '98년부터 2000년

5월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이것을 보고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새천년을 맞이해서 구태의연한 현수막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제작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고 종로구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인들이 현수막 게시할 때는 하루도 못가서 땀니다. 떼는데 우리 기관에서 우리 종로구청에서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게재했을 때는 일자가 지나도 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많죠?

○**財務局長 董連浩**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福同委員** 앞으로는 현수막이나 이러한 게시하는 것을 좀 고려해서 예산 낭비를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를 보면 약 330건입니다. 330건이죠?

○**財務局長 董連浩** 333건입니다.

○**金福同委員** 약 330건,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너무나 많은 지출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의 목록을 해서 주 예를 들어서 본다면 기획예산과에서 30번 플래카드 제작, 관수동 143-5, 대명기업 유급종 유급종이 누굽니까? 종로구청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유급종이라는 사람이 많이 했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19만 2,000원 그렇게 되어 있죠? 몇 개에 19만 2,000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현수막 몇 m짜리에 몇 개를 했는데 19만 2,000원이다 이런 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요?

○**財務局長 董連浩** 여기 유인물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마는 이것을 발주를 하는 품위 서류에는 개수와 플래카드의 규격이 제시되어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에 기재 안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래도 간략하게 그 정도 몇 m짜리 몇 장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것이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財務局長 董連浩** 아무튼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마는

○**金福同委員** 그 다음에 또 보면 목록에 40입니다. 홍보포스터 구매 해가지고 중화1동 284-18 정우철 해서 제작 '98년 4월 2일 수의 309만 9,990원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연번 40번 홍보포스터 구매는 지금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다 한 다음에 목록을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총무과는 플래카드 제작

○**財務局長 董連浩** 몇번이죠?

○**金福同委員** 67번입니다. '98년 7월 16일자 수의, 156만 8,160원 총무과 이것도 주시고 홍보안내판 제작해서 명진기업 계동 140-81 전두환 72번 717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홍보안내판 제작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董連浩** 이것은 관련서류를 보고 방금 앞서 지적하신 것과

○**金福同委員**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74번 플래카드 제작 내가 하나를 든다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것을 대충 한군데로 몰아왔습니다. 4만 8,000원 이것은 가장 싸게 했습니다. 이것은 몇 m짜리다, 게시를 어느 장소에 했다 이런 정도까지는 좀 나와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116번 플래카드 제작, 대명기업, 관수동 유종금, '98년 12월 29일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를 대충 봤습니다. 그 다음에 140번 현수막 제작 16만 8,000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문화진흥과 해서 119만 3,000원 이것은 플래카드 구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몇 매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그 밑에 보면 145번에 27만 8,000원 대충 적었다가 빼주십시오. 기획예산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162번 플래카드 제작 4만 9,000원 그 다음에 Y2K 홍보제작 삼일기업 180번에 17만 8,700원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186번 플래카드 제작 9만 3,000원 기획예산과에 191번 현수막 제작 이것은 18만 7,000원 그 다음에 202번 현수막 제작 12만 8,000원 기획예산과만 합니다. 208번 현수막 구매 25만원, 기획예산과 231번 35만 8,000

원 그 다음에 238번 96만 8,000원 기획예산과 플래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271번 현판 및 플래카드 구매해서 649만원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291번 구청 홍보게시판 구매 213만 8,070원 기획예산과 플래카드 구매 63만 7,560원 308번입니다. 기획예산과 플래카드 제작 3만 5,800원 기획예산과 325번 13만 1,000원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마는 대충 몇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곳에다 게시를 했으며 몇 장이며 이것을 직원 시켜서 간략하게 빼다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76번 보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총계표 '99년부터 2000년 5월까지 해서 이것이 어느 곳에서 조달청 가격입니까? 목록이. 다 조달청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대부분이 조달구매입니다.

○**金福同委員** 그러면 각 과에서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지 않습니다. 구매요청을 총무과에 요구를 내면 그것을 수합을 해서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이것 하기 전에 조금 전에 현수막비를 안했습니다. 333번까지 해서 총 금액이 얼마 했다 이것을 빼다 주세요. 말씀 안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달청에서 그러면 한꺼번에 목록을 다 적어 가지고 한꺼번에 과 별로 다 해다 줘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지 않고 이 물건을 일제히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 시점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내면 그것은 바로 수시수시 조달청에 신청을 해서 물건을 조달해오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러니까 여기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밑에 총계가

○**財務局長 董連浩** 2억 4,300

○**金福同委員** 사무용품 구입비로 목록에 여기 다 적혀있는 거죠?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런데 조달청이 아니고 직접 이러

한 구입할 수 있는 개인 상회라든가 개인 도매업이라든가 이러한 데 가게 되면 쌀 수가 있지 않을 까요?

○**財務局長 董連浩** 조달청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달품목이라고 물품이 지정되어 있고 그 물품은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고 지정되지 않은 조달품목을 그 이외의 품목을 일반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가격이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20~30% 정도 싼 게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접 우리가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생산하는 회사를 상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매우 싸리라고 봅니다. 사실 싸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달청에서 구입토록 지정된 품목을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구매물품은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청 나름대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조금도 구청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아니, 조달품목이 아닌 그 외의 품목은 저희 구청 임의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달품목에 대한 물품구매를 할 때 여기에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사인이 들어갑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청장님까지도 결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金福同委員** 청장님 결재는 얼마까지?

○**財務局長 董連浩** 1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청장님한테

○**金福同委員** 이 정도는 과장님 선에서 계·과장님 선에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과장 내지는 국장 전결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金福同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기로는 이왕에 우리 종로구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단 조금이라도 물품을 싼 가격에

사다 쓰게 되면 종로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잘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金福同委員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홍보물 제작하는 거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98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발주한 플래카드 홍보물 제작 내용이 되겠습니다'라는 금년 4월 이후로는 일체 제작을 안하도록 그런 방침을 세워서 특수한 경우 이럴테면 대통령께서 남북회담을 하고 오셔서 환영하는 그러한 내용의 플래카드를 붙이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거리에 붙이는 그런 건 안하도록 구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金福同委員** 제가 말을 마치려고 하니가 우리 국장님께서 하도록 해주는데 그렇습니다. 선진종로라고 하고 '아름다운 종로' 또 '떠나는 종로에서 돌아오는 종로' 그렇죠? 또 요즘에 아름다운 종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죠? 현수막을 종묘공원이나 광장이나 이러한 곳에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아름다운 종로가 아니에요. 아주 후진 중롭니다. 지금 어떻게 2000년 새천년 맞이해서 플래카드나, 인터넷이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 플래카드 게시를 해놓고 이런 것에서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유독 종로는 더 많이 눈에 띕니다. 낭됩니다. 거기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었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위원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 종로구에 제발 다른 차원의 신경을 써주시고 현수막같은 데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해가지고 얼마나 선전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요즘에 케이블방송도 있고 인터넷도 다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해가지고 우리 종로구 혈세를 낭비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宣相善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참고로 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재산을 소위 국·시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구 재산으로 만들어야 할 것을 못한 부분이 지금도 많습니다. 사실상 '96년 8월 13일부터 한 1개월 동안 특위를 구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 당시 구유재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찾은 것이 얼마나 되며 돈으로 환산하면 3,270억 6,100만원이라는 이 재산을 찾았던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 예산 지출을 800억으로 본다면 약 4년동안 쓸 수 있는 이 엄청난 재산을 우리가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면이 있지 않나 사료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도 보면 사유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고 구유지로 만들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또 지금 무엇보다도 일부 동사무소도 제 출신동 승인동사무소는 교육감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땅은 어떻게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든지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승인2동 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宣相善委員 승인동 청사부지는 어디 땅인지 아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부지.

○宣相善委員 국장님은 지금 종로구의 전체 재산 담당관입니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財務局長 董連浩 죄송합니다.

○宣相善委員 지금 교육감 땅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필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부분을 달라고 하면 대부분을 주고 사용할 겁니까? 현재는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동청사 부지는 일종의 행정재산으로서 행정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부지 중에 일부가 시 교육위원회 부지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

가는

○宣相善委員 행정관리국이 청사는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財務局長 董連浩 부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宣相善委員 부지도 마찬가지로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만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뿐이 아닙니다. 종로구에 도로도 보면 건교부 땅도 있어요? 그것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이런 것을 일제히 정리를 해서 정말 우리 종로구로 해야 할 땅들을 찾아서 등기등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리가 안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고도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리가 미흡해요. 당시 吳炳漢局長께서 재무국장을 잠깐 하다가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으로 가신 金星泰局長 그리고 金賢植局長님 이어서 董連浩局長님이 맡고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세월만 보냈는지 의원들이 이만큼 재정확충을 위해서 해왔는데도 정말로 실무 국·과장들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주는 것도 제대로 밥을 못먹느냐 이거죠.

○財務局長 董連浩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입안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차제에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찾아야 될 땅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얼마나 지금 더 해야되는지 분류를 해서 그것을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宣相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丁炳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감사자료 18쪽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쟁입찰 및 낙찰현황이 39건이 낙찰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39건인데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 구청에 등록된 업체입니까? 아니면 일반 아무나 와서 입찰받을 수 있는 겁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그런 업체라야 된다는지 일정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건설업체 자격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거주를 안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아니라 타지역의 어디라도 자격요건만 가지면 응찰할 수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예.

○丁炳煥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담합에 의한 입찰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설계금액, 예정가액, 낙찰금액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끼리 담합에 의해서 낙찰받는 걸로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결론을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법에 의해서 업자들의 담합행위를 규제를 하고 있고 또 담합행위를 한 업자가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제재를 가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담합이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입찰되어지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정가와 낙찰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담합의 의혹이라도 있는가 우리 국장님은 충분한 검증을 해서 입찰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丁炳煥委員 또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42건이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해서 우리 재무과하고 우리 계약업체하고 사전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예.

○丁炳煥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

원, 천원 단위는 절사할 수도 있는데 굳이 2천원까지 이것을 수의계약에 즉 말하자면 인정해주는지 우리가 충분히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만원 단위도 절사할 수 있고 천원 단위도 절사할 수 있는데 심지어 천원 단위까지도 인정해줘야 되니 이것은 우리가 조금 성의있는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정하는 것은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해가지고 예정가액의 85% 수준이면 85%, 86%면 86%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해서 계약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우연히 산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丁炳煥委員 물론 예정가에 의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그러면 천원 단위까지는 절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의만 있다면 충분히 천원이 굳이 그 양반이 천원까지 올려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절사를 하고 안하고는 사소한 일로 여겨집니다마는 천원 단위까지도 계약금액을 산출하게 된 배경설명을 보고를 드리자면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결과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우리 국장님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천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라고 하면 천원 단위는 이것을 삭감할 수 있지 않느냐 절사할 수 있지 않느냐 강력히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수의계약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만원 단위라도 될 수 있으면 절사를 해주시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업자가 만원도 %를 삭감합시다 하더라도 아마 반대하는 업자는 없을 겁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잘 유념해서 계약할 때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제가 한말씀만 하죠. 우리 宣相善委員님께서 동사무소 질의를 하셔서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화동사무소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옛날에 해화동사무소 거기가 종로수도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있었기에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아마 수도 사업특별회계에 소속된 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委員長 吳弼根** 여기에 160평 정도 될 겁니다. 땅값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66.6%의 비과세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금을 못받은 지역이 32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비과세로 해서 그렇다면 그런 해화동사무소 같은 요충지의 동사무소를 우리가 서울시에다 요구해 가지고 기부 채납 쪽으로 어떻게 받을 방법을 취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기부채납을 받는다구요?

○**委員長 吳弼根** 우리가 비과세지역으로 해가지고 우리 종로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320억이란 세금을 못 받고 있는데.

○**財務局長 董連浩** 비과세가 되고 있는 66.7%에 해당되는 땅의 대부분은 고궁, 공원, 또는 관공서 이런 곳이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하고 또 그걸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委員長 吳弼根** 아무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건 우리가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현행법에 의해서

○**委員長 吳弼根**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100%가 안 되는 거 아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국비나 시비를 더 지원해주도록 하는 그런 요청을 그동안에도 해왔고 또 이후에도 계속 요청해서 성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해화동사무소가 평당 한 5,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60평이면 얼마나 됩니까? 한 70~80억 정도 되겠죠? 財務局長이 신경을 쓰서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장님께 말씀을

잘 드려 가지고 어떻게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그래 가지고 그게 아주 요충지 아 아닙니까? 그거를 다른 데다 팔아서 해화동사무소 아주 멋지게 하나 짓고 나머지 돈은 구로 환수를 하고 하는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吳錦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94페이지 지방세 고액채납 현황을 보면 500만원 이상의 채납자 수가 1,208명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액채납자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건지 우리 局長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財務局長 董連浩**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稅務2課長 朴升年** 稅務2課長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채납액에서 가장 힘든 것이 주민세 채납입니다. 전체 채납액 중에서 한 220억 이상이 주민세 채납입니다. 이런 고액 채납자 보면 전부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부도 또는 사업 실패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일부는 재산을 압류했습니다만 후순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먼저 근저당 설정 뭐 다른 세무서에서 먼저 압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5~6개월 늦게 통보를 받고 어떤 때는 또 2~3년 늦게 통보를 받다 보니까 늦게 압류를 하다 보니까 후순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제 처분도 공매 같은 이런 절차도 못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5년이라든지 뭐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稅務2課長 朴升年** 그래서 저희들은 시효중단

조치를 하기 위해서 후순위지만 압류를 매년 3월, 5월, 8월, 12월 해서 네 번에 한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보내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행자부 전산망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만 되면 전국적으로 고액채납자, 10만원 이상 자는 전부 조회를 보내서 재산이 있으면 그때그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상당히 이거는 받기가 힘든 입장이네요? 후순위에다 지금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숫자상만 나와있지 우리가 세수로 거둬들이기는 힘들겠네요?

○稅務2課長 朴升年 그중에서 김수용씨를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13억 정도 체납을 해왔습니다. 이 분은 광산업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이 분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압류를 했습니다만 팔아먹을, 공매할 수 있는 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심지어 강원도 영월까지가 가지고 선압류를 해제해준과 동시에 그것이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알선을 해서 6억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받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액 채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를 해가지고 은행 거래를 막는다든지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때그때 취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세외수입 바로 밑에 종목별로 죽 나와있습니다만 사실 받기 쉬운 것도 체납현황에 나와 있네요?

○財務局長 董連浩 세외수입의 경우는 해당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財務局長에 부임한 이후로 매월 담당하는 계장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각 세목별로 부진사유를 공개된 회의에서 발표토록 하고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져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바 있고 또 여러 회의 등을 통해서 관련된 과장들에게 관심을 촉구해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체납된 세외수입이 워낙 광범위하고 어떤 것은 예를 들자면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이런 것은 사실상 받기가 어렵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질적인 세목이 있기 때문에 징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관심을 촉구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세목별로 보면 도로사용료 이것은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받지 말고 미리 딱딱 받아 가지고 사용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돈 내라면 잘 안내지만 이걸 며칠간 사용하겠다 이렇게 계약 조건으로 해서 미리 받아버리면 이런 일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는 지적에 대한 시스템이 아직 전산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稅務2課長 朴升年 대장은 전산화가 완료됐습니다. 도면 전산화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특히 구대장에 대한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서 의원님들 배려로 예산을 배정해주셔서 구건축물 대장하고 구토지대장을 지금 스캔작업으로 전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전산입력을 하실 적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현재의 건물명이나 현재의 어떤 큰 건물이 새로 들어섰든지 할 경우 그 건물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과거에 몇 번지에 한옥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는 몇 층 건물이 들어섰으면 어떤 빌딩이라든지 이렇게 명이 되어 있으면 지도를 볼 적에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지적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통의동 백송나무 옆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측량 의뢰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이 측량한 것과 그 옆집 사람이 자기네 땅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해서 다른 사람을 데려다 측량을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분들이니까 측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0.5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필로 그을 적에. 그런 분쟁은 우리 종로구에 없

있습니까?

○**稅務2課長 朴升年** 특별한 분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개 분쟁이 있는 것이 자기가 자기 토지만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옆집을 침범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주인인이 됐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의동 백송나무터는 당초에 백송나무 울타리가 작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확장을 하면서 그 밑에 집이 건축하는 데 침범되지 않았느냐 하는 주변민원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지적공사 지도, 감독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분쟁이 생겼을 때는 다른 측량소에 측량 의뢰를 해서 확인 받는 그런 검증 절차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세무2과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지방세 과오납을 했을 때 과오납을 환불하는데 지금도 통신망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각 동으로 통보해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해서 하고 있습니까?

○**稅務1課長 趙朝翼** 과오납에 대해서는 稅務2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오납 발생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오납을 환불받을 때 그전까지는 저희 종로구 구공금인 출장소에 와 가지고 직접 본인 확인과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불을 받아 가도록 통지를 하면 거의 다 그런 금액이 프로테이지로 봐서 70~80% 이상은 5만원 이하의 소액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개선해 가지고 저희가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직접 전화를 통해 가지고 계좌번호 확인해서 저희들이 자동이체로 해서 나오시지 않아도 되게끔 확인해서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낸 세금을 다시 돌려 받는 사항이지만 상당히 고맙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 확인된 것은 계좌를 확인해서 곧바로 입금시켜주고 전화번호가 체크되지 않은 경우는 통지서를 보내서 그쪽에서 전화가 오면 확

인해서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과오납이 되는 원인은 뭘니까? 왜 발생하는 겁니까?

○**稅務1課長 趙朝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론 공무원에 의한 착오부과도 있고 그리고 고지서가 이중으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받아가서 그걸 냈습니다. 냈는데 나중에 독촉고지서가 또 왔거든요. 그러니까 납기 내에 내지 않고 납기 후에 냈을 때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또 발부합니다. 그래서 납부하도록, 체크를 하지 않고 그걸 안낸 걸로 알고 다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이 자료를 보면 착오 과오납이 거의 절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행정에서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물론 거기에는 물론 변동 관계도 있고 납세자 착오납도 있고 하지만 착오부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 행정이 시정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자동차세 과오납이 3만원 정도 나온 게 있습니다. 아직 찾지를 않았습니까? 그것도 통신으로 하니까 사실 제가 여기 자주 나오지만 그래도 불편하고 잊어버리고 해서 지금까지 찾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볼 적에 그걸 통신으로 해서 안될 경우는 요즘 행정 서비스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직접적으로 동을 통해서라도 과오납 하신 분들한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稅務1課長 趙朝翼**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吳錦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丁炳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90페이지 지방세 시효결손처분 현황에서 결손사유는 어떻게 해야 결손이 되는지, 우리 2000년도 4월 30일 과년도 거 합해서 2,439건에 3,628만원이 결손인데 결손처분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稅務2課長 朴升年** 결손에는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무재산인 자라든지 행방불명자로서 부과한지 5년이 지나면 그건 징수권 소멸로 시효결손을 합니다. 시효결손을 안 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동차까지 우리가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은 우리가 공매를 의뢰했거나 타기관에서 공매를 했을 때 그게 낙찰되면 우리가 세금을 받은 이후 잔여기일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또 행방불명자라든가 도저히 형편상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납결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불납결손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국세는 6~8%를 매년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0.02%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적극적인,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을 가지고 해도 힘에 벅찬데 못 받을, 받지 못할 세금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에는 될 수 있으면 불납결손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90년도에 부과한 것도 이제서 독촉장을 보내는데 혹은 여기에 결손처분 현황에서는 파산선고자도 포함됩니까?

○**稅務2課長 朴升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것은 '90년도에 종합소득세 그것이 세원이 납부를 한 세원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96년도에 우리한테 통보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효결손 대상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10만원 미만은 재산 압류를 못 합니다. 너무나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우리 세무과에서도 과세만 할 게 아니라 납세를 결손이 안 되도록 독려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稅務2課長 朴升年**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丁炳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宣相善委員!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아까 구세, 시세를 하면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吳錦南委員께서 질의한 도중에 전체적인 액수가 각기 틀려요. 吳錦南委員이 자료를 가져왔던 것은 769억인데 아까 局長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옆에서 課長님들이 가져와서 해도 다 틀리게 말하는데 이와 같은 원인이 됩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자세가 아주 불성실한 것 같은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 모여 가지고 과장들 다 계시는데 그 정도의 수치 데이터가 안 맞는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소 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稅務2課長 朴升年** 吳錦南 副議長님께서 가져 오신 자료가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자료가 2월 말 결산한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청장님께서 답변한 자료는 2000년 4월 30일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시점으로 해서 답변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局長님께서 하신 답변은 2월 28일 결산을 한 자료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4월 30일이건 5월 30일이건 보다는 '99회계년도 하면 2월 28일이기 때문에 2월 28일 결산 시점의 체납자료가 정확한 자료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2월 28일 현재로 한다든지 아니면 4월 30일 현재로 한다든지 무슨 말씀을 해줘야지 그것도 없이 하니까 어느 쪽에 기준을 맞춰야 할지 모른다 이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稅務2課長 朴升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宣相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장시간 局長님, 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우리 종로구 재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수입을 발굴하는 데도 노력을 해주셔야 하고 또 거기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세수를 하

는데도 좀 미수납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타구에서는 지방세를 지금 현재 이메일로 발송을 해서 10억 이상을 절감한다고 합니다. 우리 종로구에도 이메일로 해서 지방세나 기타 다른 세수를 받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稅務2課長 朴升年 지금 강남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4~5억이 들어간 걸로 압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도 인터넷으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4월부터.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吳錦南委員 그런 좋은 것을 시행하고 있으면 설명자료에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局長님이나 우리 종로가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답변하시네. 어쨌든 가능한한 우리 인건비나 이런 것이 정보화시대가 자꾸 되니까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에서 우리 종로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吳錦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丁炳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감사자료에 연말 감사 때라도 말입니다 제반 세금과세표준예산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령 2000년도 6월 달까지 예상된 실적대비표를 세목별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財務局長 董連浩 네

○丁炳煥委員 그러면 한 눈에 과세를 얼마나 했고 예산을 가령 6월 달에 실적대비표가 몇 % 징수를 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대비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丁炳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金福同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우리 종로구의 공시지가가 IMF로 인해서 10% 내려갔습니다.

금년에 공시지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작년 대비 약 2.2% 정도 상승된 걸로 조사했습니다.

○金福同委員 공시지가가 오르는 게 낫습니까? 오르지 않는 게 낫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재산을 유지하려면 제 가격을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金福同委員 2000년 들어와서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네요?

○地籍課長 徐燦奎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넣지 않았는데 이의신청 기간인 6월 30일자로 공시하면 이후부터 한 달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내 다시 조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金福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의껏 임해주신 財務建設委員會 委員님과 董連浩 財務局長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委員長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委員 여러분께서는 6월 28일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25分 散會)

○出席委員 9人

吳弼根 崔康洵 吳錦南 玄壽漢

丁炳煥 李炯述 金福同 金以煥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財務局長 董連浩

財務課長 李東明

稅務1課長 林晔宅

稅務2課長 朴升年

地籍課長 徐燦奎